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완성보증 용어를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 수정하고,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‘문화산업 완성보증’, ‘문화산업 특화보증’, ‘문화산업 수출보증’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(안 제3조의3)
- 나. 기존 ‘완성보증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, ‘완성보증기관’을 ‘보증기관’으로 명칭 변경(안 제10조의2~제10조의4, 제10조의6~제10조의9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문화산업보증의 종류)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산업보증의 종류”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.

1. 문화산업완성보증 :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(引渡)할 수 있도록 제3조의2에서 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·금부(給付)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
2. 문화산업특화보증 :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대출·금부(給付)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
3. 문화산업수출보증 : 문화상품의 수출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·금부(給付)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

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증

제10조의2 중 ‘완성보증계정’을 ‘문화산업보증계정’으로, ‘완성보증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 한다.

제10조의3 중 ‘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(이하 “완성보증기관”이라 한다)’을 ‘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(이하 “보증기관”이라 한다)’으로 한다.

제10조의4 중 ‘완성보증기관’을 ‘보증기관’으로, ‘완성보증기관의 장’을 ‘보증기관의 장’으로 한다.

제10조의6 중 ‘완성보증기관’을 ‘보증기관’으로, ‘문화산업완성보증(이하 “완성보증”이라 한다)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, ‘완성보증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 한다.

제10조의7 중 ‘완성보증기관’을 ‘보증기관’으로, ‘완성보증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 한다.

제10조의8 중 ‘완성보증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 한다.

제10조의9 중 ‘완성보증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3조의3(문화산업보증의 종류)</u> <u>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산업보증의 종류”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.</u> <u>1. 문화산업완성보증 :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(引渡)할 수 있도록 제3조의2에서 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·급부(給付)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</u> <u>2. 문화산업특화보증 :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대출·급부(給付)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</u>

	<u>증하는 것</u> 3. <u>문화산업수출보증 : 문화상품의 수출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·급부(給付)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</u> 4. <u>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증</u>
제10조의2(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<u>완성보증계정</u> (이하 “계정”이라 한다)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	제10조의2(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) ① ----- <u>문화산업보증계정</u> -----
1. 정부, <u>완성보증계약자</u>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	1. --- <u>문화산업보증</u> -----
2. 보증수수료	2.~ 4. (현행과 같음)
3. 계정의 운용수익	
4. 그 밖의 부대수입	
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)
1. 채무이행금의 대지급(代支給)	
2. 계정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	

경비	
제10조의3(계정의 운용)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<u>완성보증계정</u> 이 설치된 기관(이하 “ <u>완성보증기관</u> ”이라 한다)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	제10조의3(계정의 운용) ----- <u>문화산업보증계정</u> 이 설치된 기관(이하 “ <u>보증기관</u> ”이라 한다)은 -----
1. 금융기관에의 예치	1. ~ 2. (현행과 같음)
2. 국채, 지방채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	
제10조의4(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) ① <u>완성보증기관</u> 은 계정의 회계를 <u>완성보증기관</u> 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	제10조의4(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) ① <u>보증기관</u> 은 ----- <u>보증기관</u> 에서 -----
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완성보증기관</u> 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	③ <u>보증기관</u> 의 장은-----

④ <u>완성보증기관의 장</u> 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,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④ <u>보증기관의 장</u> 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의6(<u>완성보증기관</u> 의 업무) <u>완성보증기관</u> 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<u>문화산업완성보증</u> (이하 “ <u>완성보증</u> ”이라 한다)의 운용 및 관리 2.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.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(代位權)의 행사 4. <u>완성보증제도</u> 의 연구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	제10조의6(<u>보증기관</u> 의 업무) <u>보증기관</u> 은 ----- ----- -----. 1. <u>문화산업보증</u> 의 운용 및 관리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문화산업보증제도</u> 의 연구 5.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7(업무방법서의 제출) <u>완성보증기관</u>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. <u>완성보증</u> 계약의 체결에 관	제10조의7(업무방법서의 제출) <u>보증기관</u> 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문화산업보증</u> -----

한 사항 3. <u>완성보증</u> 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.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----- 3. <u>문화산업보증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8(보증수수료율) <u>완성보증</u> 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·지출 균형 유지,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, 제10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.	제10조의8(보증수수료율) <u>문화산업보증</u> 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의9(<u>완성보증</u> 총액의 한도) 계정에 따른 <u>완성보증</u>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.	제10조의9(<u>문화산업보증</u> 총액의 한도) ----- <u>문화산업보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	
연 락 처	044 - 203 - 2582